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구 미 시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사유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도로 조명등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야간 통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민간금융 투자금에 대한 상환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구미시 관내 가로등 3,000등을 민간금융(16억원)활용하여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

나. 민간금융 투자금은 절감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액으로 사업 준공 후부터 매년 분할하여 상환하고자 함

다. 사업명 : LED가로등 교체사업

- 사업기간 : 2021.10. ~ 2022. 6.
- 사업대상 : 가로등 3,000등
- 사업내용 : 나트륨등기구 250~400W → LED100W 교체
- 사업비 : 1,600백만원

3. 사업비 및 예산절감

가. 사업비 : 1,600백만원 (민간금융)

나. 예산절감(3,000등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절감			전력사용량 (kWh/년)
	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재료비)	
교체전	380	366	14	3,285,000
교체후	146	146	0	1,314,000
절감액	234	220	14	1,971,000

다. 민간투자금 회수기간(상환기간)

(단위: 백만원)

총투자사업비	연간 절감액	투자대비 예상 회수기간
1,600	234	7년

4. 사업효과

- 도로조명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도로환경 개선,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관리비 절감으로 시 재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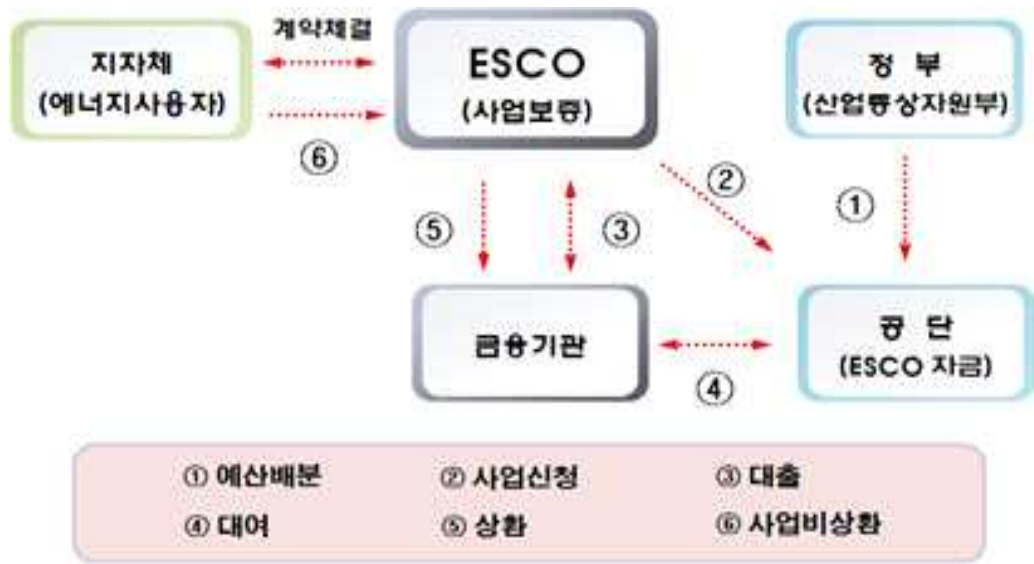
5. 금융연계 상환계획 및 사업추진 방식

가. 금융연계 상환계획

(단위: 천원)

회차	월 별	금융연계 상환내역			비 고
		소 계	민간금융	이자(1.75%)	
합 계		1,654,200	1,560,000	94,200	
1	2022. 01	236,324	222,857	13,467	
2	2023. 01	236,324	222,857	13,467	
3	2024. 01	236,324	222,857	13,467	
4	2025. 01	236,324	222,857	13,467	
5	2026. 01	236,324	222,857	13,467	
6	2027. 01	236,324	222,857	13,467	
7	2028. 01	236,256	222,858	13,398	

나. 사업추진 방식



- ESCO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44조
-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무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소관부서		도 로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재 범
	담 당	최 병 수
	담 당 자	석 기 식 (480-5482)